

예 산 총 칙

제 1 조 2010년도 세입·세출 예산총액 및 회계별로 일시 차입할 수 있는 최고액은 다음과 같다.

(단위:천원)

구 분	세입·세출예산총액	일시차입한도액
합 계	538,500,000	16,155,000
일반회계	450,500,000	13,515,000
특별회계	88,000,000	2,640,000
공기업특별회계	27,100,000	813,000
상수도사업특별회계	14,500,000	435,000
하수도사업특별회계	12,600,000	378,000
기타특별회계	60,900,000	1,827,000
수질개선특별회계	3,379,000	101,370
의료보호비특별회계	2,098,000	62,940
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특별회계	660,000	19,800
새마을소득특별지원운영특별회계	2,358,000	70,740
주택사업특별회계	740,000	22,200
농공지구(단지)조성관리특별회계	300,000	9,000
공업단지조성사업특별회계	1,400,000	42,000
치수사업특별회계	2,940,000	88,200
주차장운영특별회계	4,450,000	133,500
대지보상특별회계	800,000	24,000
기반시설관리특별회계	35,000	1,050
김천일반산업단지조성사업특별회계	41,740,000	1,252,200

제 2 조 세입·세출 예산의 명세는 별첨 " 세입·세출예산 " 과 같다.

제 3 조 일반회계 예비비는 5,179,482천원으로 한다.

제 4 조 일반회계 지방채차입한도액은 30,000,000천원으로 한다.

제 5 조 지방재정법 제47조제1항 단서규정에 의한 총액인건비에 포함된 경비 및 동일 부서에서 동일 부문에 있는 정책사업 간의 경비는 상호 이용할 수 있다.